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47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금고”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9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교육정책 사업 또는 학생복지 사업으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관리에 직접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해당 기금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족액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재정안정화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금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